

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기준표(제37조의2제2항 관련)

토지매수 및 보상금액별	위임수수료요율기준 (토지매수 및 보상금 액에 대한 비율)	비 고
10억원이하	20/1000이내	(1) "토지매수 및 보상금액"이라 함은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)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
10억원초과 30억원이하	17/1000이내	(2)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임수수료의 요율에 이를 가산한다.
30억원초과 50억원이하	15/1000이내	(3)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,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.
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	13/1000이내	(4)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임수수료 요율기준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.
100억원초과	10/1000이내	(5)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.